인사·보수규정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

2014.4.11

케이티 노동조합

위원장 정 윤 모 (인)

[붙임]

인사·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Ⅰ. 인사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G직'이라 함은 상무보 미만 직위의 직원 중 C직, A직, Sales직 및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C직'이라 함은 고객접점분야에서 회사 상품의 개통과 A/S 및 판매를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3. 'A직'이라 함은 해외고객 및 국내 공공고객, 대형기업고객 대상으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3의2. 'Sales직' 이라 함은 국내 유통영업 및 고객 리텐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4. '직위'라 함은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환직'이라 함은 G직을 A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G직'이라 함은 상무보 미만 직위의 직원 중 C직, A직, Sales직 및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C직'이라 함은 고객접점분야에서 회사 상품의 개통과 A/S 및 판매를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3. 'A직'이라 함은 해외고객 및 국내 공공고객, 대형기업고객 대상으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3의2. 'Sales직' 이라 함은 국내 유통영업 및 고객 리텐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4. '직위'라 함은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삭제> 6. '환직'이라 함은 G직을 A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직렬' 관련조항삭제**

G직에서 A직으로 임명한 직원을 다시 G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G직의 직무의 군을 말한다. *<이하 생략>*	G직에서 A직으로 임명한 직원을 다시 G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이하 생략>*	**'직렬' 조항삭제**
제12조(전직과 환직) 회장은 각 급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전직 또는 환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직 및 환직기준, 자격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A직으로 채용된 자는 환직할 수 없다.	**제12조(환직)** 회장은 각 급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환직기준, 자격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A직으로 채용된 자는 환직할 수 없다.	**'직렬' 관련조항 부분삭제**
제20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중략>*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및 회사가 정한 일정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이 재충전 또는 창업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대상, 시기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20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중략>* ④ 회사가 정한 일정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이 재충전 또는 창업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대상, 시기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이하 생략>*	**'명예퇴직' 관련조항 부분삭제**

제2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그 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에 인사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사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인사권자가 30일 이내에 복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4항의 규정 중 전직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자는 복직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그 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에 인사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사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인사권자가 30일 이내에 복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명예퇴직' 관련조항삭제
제26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질병 및 공상자 이거나 정년 퇴직일이 1년 이상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속기간, 연령 등 퇴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명예퇴직)<삭제>	'명예퇴직' 조항삭제

※ 부칙 (2014.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 보수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13조(휴직기간중의 보수)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2. <생략> 3. 전직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월기준급, 월역량급 및 성과급을 지급한다. 4~5. <생략>	제13조(휴직기간중의 보수)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2. <생략> 3. <삭제> 4~5. <생략>	전직 지원 교육을 위한 휴직 폐지
제35조(근속기간의 계산)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6. <생략> 7. 전직지원교육을 위한 휴직기간 ⑤ <생략>	제35조(근속기간의 계산)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6. <생략> 7. <삭제> ⑤ <생략>	"
제39조(명예퇴직금) ① 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월기준급과 월역량급을 합한 금액에 제2항에 의거 산출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잔여월수의 산출방법은 퇴직익일부터 정년퇴직	제39조(명예퇴직금)<삭제>	정기 명예퇴직 폐지

일전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2월당 1월로 계산하고, 5년을 초과한 10년까지는 5년까지의 잔여월수에다가 5년을 초과하는 잔여월수 매 4월당 1월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잔여월수 계산시 4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 부칙 (2014.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제20조에 의해 전직지원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보수규정 제13조에 의한 보수와 제39조에 의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